

「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13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0(수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7조와 각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요율이 일부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각 법령 등에 부합시키는 한편 그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임
- 나. 주요골자
 - 현행수수료 요율 150항목 조정(안 제3조제1항)
 - 개별법령에 수수료 요율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징수 근거가 불명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함
 -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위임된 23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,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21개 항목은 존치시켜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함
 - 존치 21개 항목 중 20개 항목 요율 인상(안 제3조제1항)
 - 존치된 21개 항목 중 1건은 동결하고 21개 항목은 인상함

- 인상된 항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표준안 제안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이 중 14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행자부령을 반영한 것임
- 정보공개수수료 효율 신설(안 제3조제2항)
 -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
- 적용기한 만료 조항 삭제(안 제3조의2)
-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(안 제7조)
 -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 등으로 확대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효율을 개별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신규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기존의 수수료 효율 150개 항목 중 조례로 규정하기에 부적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하고, 신규지정 24개 항목과 기존의 21개 항목을 존치하여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하며, 행정자치부령 등을 반영하여 존치항목 중 20개 항목을 인상하고,
- 또한 정보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

내용으로,

다. 결과적으로,

- 기존의 징수 근거가 불명확한 항목 등을 삭제하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, 기존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일부 조정하였고,
- 안 제7조의 수수료감면 대상자 확대관련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 규정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책무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끝.